

# 서울특별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김혜지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2514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5년 03월 28일  
발 의 자: 김혜지 의원(1명)  
찬 성 자: 강석주, 고광민, 곽향기,  
김동욱, 김영철, 김원중,  
김원태, 김재진, 김종길,  
김태수, 남궁역, 남창진,  
민병주, 박춘선, 서상열,  
신복자, 유만희, 유정인,  
윤기섭, 윤종복, 이봉준,  
이상욱, 이종태, 이종환,  
최민규, 허 훈, 홍국표  
의원(27명)

## 1. 제안이유

- 서울시 어린이놀이시설에서는 음란물 시청 등 성적(性的)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용을 제한하도록 조례가 개정되었으나 서울시 초등학교, 유치원 등 교육청 관리 소관의 어린이놀이시설은 해당되지 않아 이를 보완하고 인용 조례의 오류 등 일부 자구를 수정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 수립하는 관리계획에 어린이 보호를 위한 폐쇄회로텔레비전 등 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(안 제3조제2항제4호).
- 나.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시설 이용자나 관리자 등에게 성적(性的) 수치심을 일으켜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용을 제한하도록 함(안 제5조제6호).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별첨)

다. 기타 : 신 구조문대비표

## 서울특별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 
제3조제2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, 같은  
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어린이 보호를 위한 폐쇄회로텔레비전 등 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 
제5조제2호 중 “애완동물”을 “반려동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6호를 제7호로 하  
며,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시설 이용자나 관리자 등에게 성적(性的)수치심을 일으켜 위해를 주는  
행위

제7조제2항 중 “「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복지 민관협력 활성화 조례」”를  
“「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복지 기본 조례」”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          행	개           정           안
<p>제3조(관리계획의 수립) ① (생략)</p> <p>② 제1항의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<u>&lt;신설&gt;</u></p> <p>4. ~ 7. (생략)</p> <p>③ (생략)</p> <p>제5조(행위의 제한) 교육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개, 고양이, 닭 등 가축을 풀어 놓거나 <u>애완동물</u>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</p>	<p>제3조(관리계획의 수립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<u>어린이 보호를 위한 폐쇄회로텔레비전 등 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</u></p> <p>5. ~ 8. (현행 제4호부터 제7호까지와 같음)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5조(행위의 제한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 ----- <u>반려동물</u> ----- ----- ----- -----</p>

3. ~ 5. (생략)

<신설>

6. (생략)

제7조(안전감시원) ① (생략)

② 제1항의 안전감시원은 「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복지 민관협력 활성화 조례」에 따라 자원봉사자로 하게 할 수 있다.

3. ~ 5. (현행과 같음)

6. 시설 이용자나 관리자 등에게 성적(性的)수치심을 일으켜 위해를 주는 행위

7. (현행 제6호와 같음)

제7조(안전감시원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「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복지 기본조례」-----  
-----.

# 서울특별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# 1. 비용발생 요인

- 서울특별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조항	추계대상 여부	판단 내용
제3조(관리계획의 수립) 제2항제4호	△	폐쇄회로텔레비전(일명 CCTV) 설치에 따른 비용발생의 여지 <sup>1)</sup> 가 있어 서울시교육청 관련부서(교육행정국 교육시설안전과)에 문의하였으나 현재로서는 추가설치될 수량(Q)이 파악되지 않아 객관적 추계가 곤란함(임의추정 곤란)

#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

### 3. 미첨부 사유

-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(제3조제2항)
  - 안 제3조(관리계획의 수립)제2항제4호에 따른 폐쇄회로텔레비전 등 안전시설 설치비용은 현재 설치 수량(Q)이 정해진 바 없어 소요비용 추정이 곤란함
  - [추계가능성 및 재정소요 영향 검토] 폐쇄회로텔레비전 등 안전시설 설치 소요금액을 추정하려면 먼저 미설치된 장소를 파악하고 추가 설치 수량(Q)을 확정하는 한편 폐쇄회로텔레비전에 대한 단가<sup>2)</sup> (종류, 화질 등에 따라 상이) 검토가 필요할 것임
  - ⇒ 또한 향후 서울시교육청 관련부서 차원의 어린이놀이시설 내 CCTV설치 현황 파악이 이루어져야 비로소 금액추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

### 4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     재정분석담당관  
 담    당    관      주    병    준  
 추계세제팀장      김    중    헌  
 추계분석관      손    제    승  
 ☎ 02-2180-7953  
 e-mail : smclt22@seoul.go.kr

- 1) [같은 조례 다른 규정과 결합한 재정소요 여부 확인] 현행 같은 조례 제4조(예산 확보 및 지원)와 결합하여 추가재정소요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어 기존 어린이놀이시설 내 폐쇄회로텔레비전 등 안전시설 설치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음  
 ⇒ 서울시교육청 관련부서(교육행정국 교육시설안전과) 확인결과 대부분의 학교 및 유치원 내 현재 CCTV가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“어린이놀이시설 내 설치 현황”은 현재 파악되지 않아 향후 본 규정에 따라 추가설치될 가능성이 있음

[참고] 관리계획에 대한 예산지원 관련 규정

「서울특별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」

제4조(예산 확보 및 지원) ① 서울특별시교육감(이하 “교육감”이라 한다)은 제3조의 관리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이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 
 ② 교육장은 제3조의 관리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- 2) 다만 단가(P)는 기설치한 CCTV 단가와와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 기존사례 단가를 활용하여 추정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